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332 발의연월일: 2022. 7. 6.

발 의 자:정경희·배준영·성일종

이만희 • 이종배 • 이종성

이태규・조경태・조명희

홍석준 • 황보승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·도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,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수 있음.

그런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당선인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, 이는 교육감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 적 근거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,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, 교육감직인수

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교육감당선인은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한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,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며,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,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2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·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중 "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을"을 "교육감당선인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중 "교육감의"를 "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중 "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으로"를 "제5항에 따른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으로"를 "제5항에 따른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으로"를 "제5항에 따른 위원장·부

-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(이하 "교육감당선인"이라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.
- ⑦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

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의2(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	제50조의2(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
설치) <u><신 설></u>	설치)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
	으로 당선된 사람(이하 "교육
	감당선인"이라 한다)은 이 법
	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
	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
	한을 갖는다.
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	② 교육감당선인을
<u>당선된 사람을</u> 보좌하여 교육	
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	
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	
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	
(이하 이 조에서 "인수위원회"	
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
② 인수위원회는 교육감의 임	<u>③</u> <u>교육감당선인</u>
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	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
지 존속할 수 있다.	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$\underline{4} \cdot \underline{5}$ (현행 제3항 및 제4항
	과 같음)
⑤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이	⑥ 제5항에 따른 위원장·부위
추천하는 사람을 제4항에 따른	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
위원장 ·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	<u>고, 교육감당선인이</u>

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신 설>

<신 설>

⑥·⑦ (생 략)

①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 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,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
<u>⑨·⑩</u> (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)